

규 칙

1992. 10. 08. 개정

1995. 11. 17. 개정

1997. 11. 21. 개정

2000. 11. 21. 개정

2004. 11. 22. 개정

2020. 11. 2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 제45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2조 (회원가입) ① 개인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개인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② 기업회원이 되고자 하는 업체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자료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3조 (회비) 각종 회원의 회비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금액의 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의한다.

1. 입회비

개인회원, 자료회원

2. 년회비

개인회원, 자료회원, 기업회원(특급, 1급, 2급)

3. 종신회원 : 종신회비는 개인회원에 대해서 년회비의 10배로 한다.

4.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는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업회원 가입의 갱신) 기업회원이 기업 및 단체를 분리하거나 타기업 및 타단체와 합병한 때에는 신자격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부한 입회비,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권리, 의무) 회원은 규칙 제3조에 정한 회비를 매 회계년도 초에 납부함으로써 다

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위원회 참여권
3. 기타 협회사업 참여권
4. 정기 간행물 수취권
5. 기타 비매간행물 수취권

제 3 장 사 업

제7조 (회지 및 도서간행) 본회는 년 6회 이상의 회지를 발간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지 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제8조 (간행물의 내용) 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 기술보고, 본회의 사업 및 회무에 관한 제보고,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를 게재하며 기타 도서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 (간행물의 배포) 회지는 전 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하며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 (간행물의 대가) 회지 기타 간행물은 적당한 대가로 희망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가격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 (간행물의 기증) 회지 기타 간행물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증할 수 있다.

제12조 (강연회의 개최) 본회는 년 1회 이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제13조 (강연회의 내용) 강연회에서는 공기조화, 위생 등 건축설비분야 전반 및 냉동·냉장에 관련된 학술강연, 일반강연 및 회원의 지식향상을 위한 사항을 발표한다.

제14조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의 개최)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집회를 개최한다.

제15조 (표준규격기준 제정 및 인증업무)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설비기술에 관한 각종 규격, 기준제정 및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자문 및 건의와 용역)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자문 및 용역에 응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 (기타사업)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정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사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포 상

제18조 (공로상)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공로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학술상) 본회는 관련분야 학문의 발전에 뛰어나게 공헌한 저서 또는 논문을 낸

회원에 대하여 학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기술상) 본회는 관련분야 기술의 향상 또는 개발에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 기술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의 규정)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임원 및 대의원

제22조 (임원의 선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 (대의원의 선거) ① 대의원은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정수는 90명 이내로 정하되, 당연직 대의원은 별도로 한다.

③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 정수의 80%는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20%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본회의 전·현직 고문과 회장, 현직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⑤ 당해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 선출 대의원 20%이내에 포함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선거관리규정) 대의원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5조 (전회장의 권한) 회장을 역임한 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사무의 인계) 신규 임원은 구임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를 인수·인계한다.

제28조 (이사의 직무) 이사의 직무별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과 부회장의 협의로 직무를 정하여 보한다. 총무이사, 경리이사, 사업이사, 편집이사 <2020.11.25 개정>

제29조 (회무의 분장) 이사의 회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20.11.25 개정>

총무이사 : 인사, 문서, 서무일반, 회원관리

경리이사 : 예산, 결산, 금전보관, 출납

사업이사 : 견학, 연구용역, 강연, 강습, 보수교육, 섭외, 홍보, 제도개선, 기획, 기술개발, 기술보급, 기술검토, 표준규격제정관리, 기타사업

편집이사 : 회지, 논문집, 기타간행물의 편집발행 조사

제 6 장 이 사 회

제30조 (이사회회의 개최) 이사회는 년 6회 이상 정기 개최하며 회무 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 7 장 위 원 회

제31조 (위원회 설치) 본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상설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 (위원추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33조 (위원회 임무) 상설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임시위원회는 그 임무종료와 동시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대의 발표규제) 각 위원회에서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지 회 및 분 회

제35조 (지회설치)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50인 이상인 지방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 (지회 임원 및 임기) 지회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회장 : 1인, 부지회장 : 2인, 감사 : 2인

총무 : 1인, 간사 : 약간명

제37조 (지회임원의 선출) ① 지회의 임원은 지회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중에서 지회 총회시 지회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간사는 지회장이 위촉한다.

제38조 (지회장의 직무) ① 지회장은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회장은 지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39조 (부지회장의 직무)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제40조 (지회감사의 직무) 지회감사는 지회 회무를 감사한다.

제41조 (지회총회의 개최) 정기 지회총회는 매년 본회 정기총회 25일 이전에 개최한다.

제42조 (지회의 사업) 지회가 본회의 사업이나 명예에 관련된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지회의 경비) 본회는 지회 개인회원이 납부한 년회비의 50%와 지회회원이 납부한 종신 회비 납부 총액에 대한 년이자 50% 및 지회로 가입 신청되어 본회가 인준한 기업회원의 년회비중 50%를 지회경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 (회무 보고) 지회는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사업의 보고를 매회기말에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시행세칙의 제정) 본 규칙에 제정된 사항 외에 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은 지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 (분회의 설치) 회원 5명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분회를 둘 수 있으며 분회에는 회장이 위촉한 분회장 1인을 둔다.

제 9 장 보 칙

제47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및 각종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칙은 199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199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